

圖書館振興法(法律 第 4,352號, 1991. 3. 8)

第 1 章 總 則

第 1 條(目的) 이 法은 圖書館의 設置・운영과 奉仕에 필요한 사항을 規定하여 圖書館의 건전한 육성과 각종 文化・教育施設과의 相互協力 增進을 도모함으로써 社會 각 분야에 대한 知識・情報의 提供 및 流通의 효율화와 文化發展 및 平生教育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.

第 2 條(定義)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.

1. “圖書館”이라 함은 圖書館資料를 蒐集・整理・分析・보존・蓄積하여 公衆 또는 特定人の 이용에 提供함으로써 情報利用・調查・研究・學習・教養등 文化發展 및 平生教育에 이바지하는 施設을 말한다.
2. “圖書館資料”라 함은 圖書館이 蒐集・整理・分析・보존・蓄積하는 圖書・記錄・小冊子・連續刊行物・樂譜・地圖・사진・그림등 각종 印刷資料, 映畫필름・슬라이드・音盤・비디오物・マイクロ形態物・테이프등 視聽覺資料, 電算化資料, 公文書등 行政資料, 鄉土資料 기타 圖書館奉仕를 위하여 필요한 資料를 말한다.
3. “公共圖書館”이라 함은 公衆의 情報利用・文化活動 및 平生教育을增進함을 主된 目的으로 하는 圖書館을 말한다.
4. “大學圖書館”이라 함은 教育法에 의하여 設立된 大學(教育大學・師範大學・放送通信大學・開放大學・專門大學 및 이에 準하는 各種學校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및 다른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大學教育課程이상의 教育機關에서 教授와 學生의 研究 및 教育을 지원함을 主된 目的으로 하는 圖書館을 말한다.
5. “學校圖書館”이라 함은 高等學校이하의 各級學校(이에 準하는 各級學校를 포함한다)에서 教員과 學生의 教授・學習活動을 지원함을 主된 目的으로 하는 圖書館 또는 圖書室을 말한다.
6. “專門圖書館”이라 함은 그 設立機關・團體의 所屬員 또는 公衆에게 特定分野에 관한 專門的인 圖書館奉仕를 提供함을 主된 目的으로

하는 圖書館을 말한다.

7. “特殊圖書館”이라 함은 障碍人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에게 學習 · 教養 · 調查 · 研究 및 文化活動 등을 위한 圖書館奉仕를 제공함을 主된 目的으로 하는 圖書館을 말한다.

第 3 條(圖書館의 종류) 圖書館은 그 設立者에 따라 國立圖書館 · 公立圖書館 · 私立圖書館으로 구분하고, 그 設立目的에 따라 國立中央圖書館 · 公共圖書館 · 大學圖書館 · 學校圖書館 · 專門圖書館 및 特殊圖書館으로 구분한다.

第 4 條(大學圖書館등의 이용제공) ①大學圖書館 · 學校圖書館 · 專門圖書館 및 特殊圖書館은 그 設立目的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公衆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.

- ②大學圖書館 · 學校圖書館 · 專門圖書館 및 特殊圖書館은 당해 圖書館의 特性에 맞는 平生教育을 실시할 수 있다.

第 5 條(圖書館의 施設 · 資料) ①圖書館은 圖書館資料(이하 “資料”라 한다)의 보존 · 整理와 利用者的 편의를 위하여 圖書館業務에 적합한 施設 및 資料를 갖추어야 한다.

- ②圖書館의 종류별 施設 및 資料의 基準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.

第 6 條(司書職員등) ①圖書館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圖書館 운영에 필요한 司書職員 · 司書教師 또는 實技教師(司書)를 두어야 하며, 社會教育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社會教育 專門要員을 둘 수 있다.

- ②第1項의 规定에 의한 司書職員은 1級 正司書 · 2級 正司書 및 準司書로 구분하며 그 資格要件과 養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.

- ③國家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司書職員들의 研修 기타 資質向上을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.

第 7 條(文化施設과의 協力) 圖書館은 그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文化院 · 博物館 · 美術館등 각종 文化施設과 協力하여야 한다.

第 8 條(資料의 交換 · 移管 · 폐기 및 除籍) ①圖書館은 資料의 效用적 이용을 위하여 資料를 相互交換 및 移管할 수 있고 利用價值가 없게 되

거나 汚損된 資料를 폐기 또는 除籍할 수 있다.

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交換·移管·폐기 및 除籍의 基準과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.

第 9 條(圖書館發展委員會) ①圖書館의 균형있는 발전과 圖書館機能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다음의 중요사항에 관한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文化部長官 소속하에 圖書館發展委員會(이하 “委員會”라 한다)를 둔다.

1. 圖書館發展基本政策

2. 圖書館協力網의 구성 및 운영

3. 圖書館振興基金의 管理·運用

4. 기타 圖書館振興政策에 관하여 文化部長官이 附議하는 사항

②委員會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.

第 10 條(圖書館振興基金) ①政府는 圖書館의 設立, 施設 및 資料의 확충, 司書職員의 資質向上, 研究 기타 圖書館 발전에 필요한 資金에 충당하기 위하여 圖書館振興基金(이하 “基金”이라 한다)을 設置할 수 있다.

②基金은 다음 各號의 財源으로 造成한다.

1. 政府出捐金

2. 法人·團體 또는 개인으로부터 寄附金

3. 基金의 운영에서 생기는 收益金

第 11 條(基金의 管理·運用) ①基金은 文化部長官이 管理·運用한다.

②基金의 造成 및 運用에 관하여 다음 各號의 사항은 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.

1. 基金造成計劃

2. 基金運用計劃

3. 기타 基金運用上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③基金의 管理·運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.

第 12 條(金錢등의 寄附) 法人·團體 및 개인은 圖書館의 設立·施設·資料 및 운영에 관한 지원을 위하여 圖書館 및 基金에 金錢 기타 財產을 寄附할 수 있다.

第 13 條(類似名稱의 사용금지) 이 法에 의한 圖書館이 아니면 圖書館 또

는 이와 유사한 名稱을 사용하지 못한다.

第 14 條(圖書館協會) ①圖書館의 設立者는 圖書館 상호간의 資料交換 및 業務協助, 圖書館의 운영 · 管理에 관한 研究, 國際圖書館團體와의 相互協力 기타 圖書館職員의 資質向上 및 共同利益增進을 위하여 文化部長官의 認可를 받아 圖書館協會(이하 “協會”라 한다)를 設立할 수 있다.

②協會는 法人으로 한다.

③協會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中 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.

④國家는 豫算의 범위안에서 協會의 운영에 필요한 經費를 補助할 수 있다.

第 2 章 國立中央圖書館

第 15 條(國立中央圖書館) ①文化部長官 소속하에 國立中央圖書館을 둔다.

②國立中央圖書館은 그 業務를 分掌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分館을 둘 수 있다.

第 16 條(業務) ①國立中央圖書館은 國家代表圖書館으로서 다음 各號의 業務를 행한다.

1. 國內外資料의 審集 · 整理 · 分析 · 보존 · 蓄積 및 公衆에의 이용
2. 國內資料의 納本管理
3. 다른 圖書館과의 資料의 流通
4. 각종 書誌의 작성 및 標準화와 國際標準資料番號制度의 운영
5. 電算化를 통한 國家文獻情報體制 및 圖書館協力網의 統轄
6. 外國圖書館과의 協力 및 資料의 國際交流
7. 다른 圖書館에 대한 業務 · 文化活動 및 平生教育의 指導 · 지원
8. 讀書의 生活化를 위한 施策의 수립 및 實시
9. 圖書館 운영에 관한 調査 · 研究
10. 圖書館 職員에 대한 研修

11. 기타 國家代表圖書館으로서의 機能 수행에 필요한 業務

②國立中央圖書館은 그 業務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國會圖書館과 協力하여야 한다.

第 17 條(資料의 提供 및 納本) ①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圖書·連續刊行物·音盤·비디오物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資料를 發행 또는 製作한 때에는 그 發행 또는 製作日부터 30日이내에 그 資料 2部를 國立中央圖書館에 提供하여야 한다.

②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외의 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資料를 發행 또는 製作한 때에는 그 發행 또는 製作日부터 30日이내에 그 資料 2部를 國立中央圖書館에 納本하여야 한다. 改訂版을 發행하거나 製作한 때에도 또한 같다.

③國立中央圖書館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納本을 한 者에게 지체없이 納本畢證을 교부하여야 하고 그 資料에 대한 정당한 補償을 하여야 한다.

④國立中央圖書館長은 納本의 實効를 거두기 위하여 關係部處의 長에게 協助를 요청할 수 있다.

⑤納本의 節次·補償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.

第 18 條(國際標準資料番號) ①圖書 또는 連續刊行物을 發행하고자 하는 者는 그 圖書 또는 連續刊行物에 대하여 國立中央圖書館으로부터 國際標準資料番號(이하 “資料番號”라 한다)를 부여 받아야 한다.

②國立中央圖書館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業務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出版등 관련 專門機關·團體 등과 協力하여야 한다.

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資料番號의 부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.

第 3 章 公共圖書館

第 19 條(設立) 國家, 地方自治團體, 民法 기타 法律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(이하 “法人”라 한다), 團體 또는 개인은 公共圖書館을 設立할 수 있

다.

第 20 條(業務) 公共圖書館은 情報 및 文化·教育센터로서의 機能을 發揮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號의 業務를 행한다.

1. 資料의 蒐集·整理·分析·보존·蓄積 및 公衆에의 이용
2. 公衆에 필요한 情報의 提供
3. 地方行政 및 產業分野에 필요한 情報의 提供
4. 讀書의 生活化를 위한 計劃의 수립 및 實시
5. 講演會·鑑賞會·展示會·讀書會 기타 文化活動 및 平生教育의 主催 또는 嘉勵
6. 다른 圖書館과의 긴밀한 協力과 資料의 交換 또는 相互貸借의 實시
7. 圖書館 業務에 관한 調査·研究
8. 기타 公共圖書館으로서의 機能 수행에 필요한 業務

第 21 條(公共圖書館의 設立·육성등) ①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地域 社會의 情報提供 및 文化發展과 平生教育을 위하여 公共圖書館을 設立 · 육성하여야 한다.

②公共圖書館은 어린이·老人·障礙人등을 위한 圖書館奉仕에 필요한 施設을 갖추어야 한다.

③公共圖書館은 모든 地域住民에 대한 圖書館奉仕를 위하여 地域의 特性에 따라 分館·移動圖書館 또는 貸出文庫를 設置하여야 한다.

第 22 條(公立公共圖書館의 운영 ①地方自治團體가 設立·운영하는 公共 圖書館(이하 “公立公共圖書館”이라한다)의 運營費는 그 設立·운영하는 機關의 會計에서 이를 부담한다. 다만, 教育法 第52條의 規定에 의하여 教育長이 設立·운영하는 公立公共圖書館에 대하여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一般會計에서 그 運營費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.

②國家는 公立公共圖書館을 設立한 地方自治團體에 대하여 圖書館의 設立·資料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經費의 일부를 補助할 수 있다.

第 23 條(公立公共圖書館의 지원) ①文化部長官은 公立公共圖書館의 균형 있는 圖書館發展과 圖書館奉仕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文化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公立公共圖書館에 대하여 필요한 書類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第 24 條(國·公立公共圖書館의 館長 및 運營委員會)

- ①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設立·운영하는 公共圖書館의 館長은 司書職으로 補한다.
- ②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公共圖書館의 效率적인 운영과 각종 文化施設과의 긴밀한 協助를 위하여 당해 圖書館에 圖書館運營委員會를 둔다.
- ③圖書館運營委員會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.

第 25 條(法人등이 設立한 公共圖書館의 登錄등)

- ①法人·團體 또는 개인이 公共圖書館을 設立하고자 할 때에는 第5條 및 第6條의 規定에 의한 施設·資料 및 司書職員 등에 관한 基準을 갖추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文化部長官에게 登錄하여야 한다.

-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公共圖書館의 設立者가 第5條 및 第6條의 規定에 의한 施設·資料 및 司書職員 등에 관한 基準을 유지하지 못한 때에는 文化部長官은 期間을 정하여 是正을 命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登錄을 取消할 수 있다.

- ③文化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處分을 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당해 處分의 相對方 또는 그 代理人에게 의견을 陳述할 機會를 주어야 한다. 다만, 당해 處分의 相對方 또는 그 代理人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住所不明 등으로 의견을 陳述할 機會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第 26 條(私立公共圖書館의 指導·지원)

- ①文化部長官은 第25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公共圖書館(이하 “私立公共圖書館”이라 한다)의 균형 있는 圖書館發展과 圖書館奉仕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指導·지원을 할 수 있다.

- ②文化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指導·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私立公共圖書館에 대하여 필요한 書類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第 27 條(私立公共圖書館의 廢館申告)

私立公共圖書館의 設立者가 당해 圖書館을 廢館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文化

部長官에게 廢館申告를 하여야 한다.

第 28 條(私立公共圖書館의 補助)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豫算의 범위 안에서 私立公共圖書館의 운영에 필요한 經費의 일부를 補助할 수 있다.

第 29 條(使用料) 公共圖書館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利用者로부터 使用料를 받을 수 있다. 다만, 公立公共圖書館의 使用料에 관하여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第 30 條(資料의 提供) 地方自治團體가 第17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資料를 發行 또는 製作한 때에는 그 發行 또는 製作日부터 30日이내에 그 資料 2部를 管轄地域안에 있는 公共圖書館에 提供하여야 한다.

第 4 章 大學圖書館

第 31 條(設置) 教育法에 의하여 設立된 大學 및 다른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大學教育課程이상의 教育機關에는 大學圖書館을 設置하여야 한다.

第 32 條(業務) 大學圖書館은 다음 各號의 業務를 행한다.

1. 教授와 學生의 研究 및 教育活動에 필요한 資料의 蒐集·整理·分析·보존·蓄積 및 그 이용
2. 효율적 教育課程의 수행을 위한 지원
3. 圖書館이용의 體系的指導
4. 다른 圖書館과의 協力과 圖書館協力網을 통한 資料의 流通
5. 기타 大學圖書館으로서의 機能수행에 필요한 業務

第 33 條(指導·監督) 大學圖書館은 教育法과 私立學校法 기타 法律의 規定에 의한 당해 大學 또는 教育機關의 監督廳의 指導·監督을 받는다.

第 5 章 學校圖書館

第 34 條(設置) 國民學校·中學校·高等學校(이에 準하는 各種學校를 포함)은

합한다)에는 學校圖書館을 設置하여야 한다.

第 35 條(業務) 學校圖書館은 다음 各號의 業務를 행한다.

1. 學校教育에 필요한 資料의 蒐集·整理·分析·보존·蓄積 및 그 이용
2. 讀書指導 및 圖書館이용의 指導
3. 視聽覺資料의 開發·製作 및 이용
4. 기타 學校圖書館으로서의 機能수행에 필요한 業務

第 36 條(指導·監督) 學校圖書館은 教育法과 私立學校法의 規定에 의한 당해 學校의 監督廳의 指導·監督을 받는다.

第 6 章 專門圖書館 및 特殊圖書館

第 37 條(設立 등) ①國家·地方自治團體·法人·團體 또는 개인은 專門 圖書館 또는 特殊圖書館을 設立할 수 있다.

②法人·團體 또는 개인이 公衆이나 障碍人の 이용을 주된 目的으로 하는 專門圖書館 또는 特殊圖書館을 設立하고자 할 때에는 第5條 및 第6條의 規定에 의한 施設·資料 및 司書職員에 관한 基準을 갖추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文化部長官에게 登錄하여야 한다.

第 38 條(準用) 第25條 第2項·第3項 및 第26條 내지 第28條의 規定은 第 37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된 專門圖書館 또는 特殊圖書館에 대하여 각각 이를 準用한다.

第 7 章 圖書館協力網

第 39 條(圖書館協力網의 구성) ①文化部長官은 資料의 流通·管理 및 이용등에 관한 圖書館業務의 效율성을 높이고 각종 圖書館의 相互協力を 도모하기 위한 連繫體制로서 다음 各號의 機能을 수행하는 圖書館協力網(이하 “協力網”이라 한다)을 구성한다.

1. 電算化情報體系를 통한 情報 및 資料의 流通

2. 書誌編纂·情報處理·奉仕活動 및 施設 등의 標準化
3. 分擔收書·相互貸借·綜合目錄·印刷카드制度등 圖書館운영의 效率화
4. 기타 다른 圖書館과의 相互協力에 관한 사항

②協力網은 각종 圖書館으로 구성하고 協力網의 效率적 운영과 統轄을 위하여 中央館과 地域代表館을 두되, 中央館은 國立中央圖書館이 된다.

第 40 條(中央館의 業務) 協力網의 中央館은 다음 各號의 業務를 행한다.

1. 地域代表館의 지정 또는 變更
2. 協力網의 機能수행에 관한 企劃·調整 및 指導
3. 協力網운영의 統轄

第 41 條(地域代表館) ①地域代表館은 서울特別市·直轄市 및 道에 두되, 中央館이 이를 지정한다.

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地域代表館은 中央館의 指導 및 調整을 받아 旗下地域協力網의 운영을 統轄하고 그 效率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市·郡 및 區(自治區에 한한다)에 地方代表館을 둘 수 있다.

第 42 條(協力 등) 協力網機能의 效率적 수행을 위하여 圖書館의 設立者는 당해 圖書館에 필요한 施設·體制등을 갖추어야 하며, 圖書館은 中央館 및 地域代表館의 指導에 따라 다른 圖書館 및 각종 文化施設과 協力하여야 한다.

第 43 條(協力網의 운영) 協力網의 組織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.

第 8 章 補 則

第 44 條(權限의 委任·委託) 이 法에 의한 文化部長官의 權限의 일부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特別市場·直轄市長 또는 道知事에게 委任하거나 協會에 委託할 수 있다.

第 9 章 罰 則

第 45 條(過怠料) ①第25條 第1項 또는 第37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圖書館을 開設한 者는 3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.

②第13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1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.

③第17條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당해 資料定價(그 資料가 非賣資料인 경우에는 당해 刊行資料의 原價)의 10倍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.

第 46 條(過怠料의 賦課 · 徵收節次) ①第45條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文化部長官이 賦課 · 徵收한다.

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處分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文化部長官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.

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文化部長官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,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.

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.

附 則

第 1 條(施行日) 이 法은 公布후 1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.

第 2 條(다른 法律의 廢止) 圖書館法은 이를 廢止한다.

第 3 條(圖書館 登錄에 관한 經過措置) 이 法 施行 당시 종전의 圖書館法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된 私立公共圖書館 · 專門圖書館 및 特殊圖書館은 이 法에 의하여 登錄된 것으로 본다.

第 4 條(國 · 公立公共圖書館의 館長에 관한 經過措置)

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設立 · 운영하는 公共圖書館의 館長은 第24

條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날까지는 司書職 또는 行政職으로 補한다.

第 5 條(圖書館協會에 대한 經過措置) 이 法 施行 당시 종전의 圖書館法 第14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圖書館協會는 이 法에 의하여 設立된 것으로 본다.

第 6 條(다른 法律의 改正등) ①著作權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.

第28條 중 “圖書館法”을 “圖書館振興法”으로 한다.

②이 法 施行 당시 다른 法令에서 圖書館法을 引用한 경우에는 圖書館振興法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.